[회의록]제203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84차

1. 회의일시: 2025년 4월 22일(화) 오후 6시 30분

2. 회의장소: 무위당사람들 교육장(중앙로 83, 4층)
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천혜란, 정연우, 김선기, 서연남, 김태성, 최효심 (이상 이사, 총 9명)
참관 : 공영훈
불참 : 염은경, 이윤승, 이창호(3명)
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3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2월 12일(수) 제202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5년 2월 ~ 2025년 3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**제58조(사업의 이용)**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**25년 2월 신규 조합원(6명, 2명(가구원))** :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(법인), 조은경(석희국), 김성혜, 강소라(이유나), 장유원, 이혜련

- **25년 3월 신규 조합원(5명, 2명(가구원))** : 이재명(장석임), 신형균, 한원용(안상애), 이남희, 박옥남

- **총 가구원 4명(4세대)** ***총조합원수 1,715명(25년 3월 말 기준)**
-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선거관리규정 개정(안)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
- 2024년 보건복지부 업무 감사(24.05.17) 종료 후 정관-규정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에 대한 개정 조치 요구를 받았음.
- 이에 제45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

③ (신설)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④ (신설)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정관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.

⑤ (신설) 제1항~제4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로 정관을 개정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 내용

- 선거관리규정 개정(안) 승인.

■ 선거관리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9조【임원의 선임】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	**제29조【임원의 선임】**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 ③ (신설)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 ④ (신설)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정관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.	보건복지부 업무감사 개정 요청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이광희 이사장 : 조합 임원의 정수는 3명 ~ 20명 이내로 되어 있으며, ④항의 경우는 최소 정수인 3명 이하 일 때 적용되는 부분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회의록에 남기도록 조치함.

□제3호 의안 : 조합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장기적인 조합의 운영 방향에 있어 사업체로서, 결사체로서의 목적 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.
- 현 조합의 상황과 규모에 맞게, 유연하게 운영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 구성을 추진코자 함.
- 타 조합 위원회 현황
■ 안산의료사협 : 경영위원회, 복지위원회, 이용위원회, 조직교육위원회, 제2진료소추진위원회, 요양원 운영위원회, 자원봉사단운영위원회, 커뮤니티케어추진위원회
■ 안성의료사협 : 건강마을위원회, 본점 이용위원회, 경영위원회, 교육홍보위원회
■ 살림의료사협 : 교육나눔위원회, 소통과참여위원회, 마을건강위원회, 돌봄위원회, 경영위원회, 조직문화위원회

- (현)강원의료사협 위원회 현황
■ 경영위원회(원장단회의) : 공영훈(위원장)
■ 인사위원회 : 이광희(위원장)
■ 선거관리위원회 : (임원, 대의원 선출시 운영)
■ 공생추진위원회 : 천혜란(위원장)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7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.(9차 개정)

1.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 가.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사회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
 나.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
 다.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
 라.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
 마.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
 바.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
 사.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
 아. 자원봉사활동(문구 추가, 4차 개정)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
 가. (신설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9차 개정)
 나. (신설) 1.(가~아)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(9차 개정)

위원회 설치・운영규정

제1조【목적】
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제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적용범위】
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【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】
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【위원회의 위원】
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5조【위원회의 직무】
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6조【실비지급】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[제1차 제정] 2015년 4월 17일

3. 제안 내용
- 조합활성화위원회 구성 승인(위원장 및 위원 선출)

- 조합활성화위원회 역할
 조합원 참여 확대/조합 활동 다각화/조합 조직력 강화/대외 홍보/조합 발전전략 제안

-> 결정 사항 : 조합활성화위원회의 역할과 설치에 대해서만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차기 이사회때 조합원, 대의원 등 공개모집 형태의 위원회 참여구성(안)을 만들어서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다.

□제4호 기타 논의 안건

기타 논의 안건 1 : UN "협동조합의 해" 관련 조직위원회 참여의 건

1. 제안 배경
 - UN에서 두 번째로 "협동조합의 해"로 선정, 네트워크에서 행사를 준비중 인 상황임
 - 원주에서 행사를 진행 시 조합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면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조직위원회 참여 승인

-> 결정 사항 : 시기 도래시 행사 관련 회의 참석 후 조직위원회에 참여키로 함.

- 추가 의견 -

기타 논의 안건 2 :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 방향 논의의 건

1. 제안 배경
- 2024년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지속적인 적자 상황에서 TF 팀을 구성하여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비상임 박준영 부이사장이 재가센터장을 24년 8월부터 맡기로 함.
- 24년 9월 사회복지사의 퇴사에 따른 운영의 불안정성이 발생함.
- 24년 11월 중순 신규 사회복지사 인력 채용 이후 재가센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함. 25년 4월 기준 16명.
- 25년 4월 중순 경, 박준영 센터장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 재가센터장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따른 재가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 방향 논의 및 추진방향 승인

-> 결정 사항 :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(안)을 만들어 임직원들과 논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서　　명

의장 이광희　　**이사 박준영**

이사 서연남

이사 김선기

이사 최효심

이사 신승훈

이사 김태성

이사 천혜란

이사 정연우